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
----------	---

제출년월일 : 2002. 8. 28.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행정자치부의 『1·2단계 읍·면·동 기능 전환 보완지침』에 의거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주민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하여 주민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가. 주민자치센터 운영

- 주민자치센터의 명칭 일원화(안 제4조제2항)
 -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인식과 목적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의 제명과 조례중 “주민복지센터”를 “주민자치센터”로 개정
-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련 공무원 부담 완화(안 제7조제2항)
 - 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 또는 자원봉사자 등에게도 자치센터 운영관련 업무를 전담 또는 분담 수행 허용
 - 이와 관련 주민자치위원회는 업무를 담당하는 주민자치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징수한 “수강료”중 일정금액의 봉사활동비 지급 가능
-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구의 지원체계 강화(안 제7조제4항 내지 6항)
 -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구별로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음
- 사용료 등의 징수·관리체계 개선(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제6항 및 제7항)
 - 사용료 등은 “사용료”와 “수강료”로 통일하고 징수권자를 명확히 함
 - “사용료”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함으로써 동장이 징수
 -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써 주민자치위원회가 징수
 - ※ 「별표 1」로 사용료 및 수강료 상한선 규정
 - 동장이 징수하는 “사용료”는 소속공무원을 회계책임자로 지정하여 징수·관리(구의 세입으로 처리)
 - 주민자치위원회가 징수하는 “수강료”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 운영경비로 사용
- 저소득자 등 일정한 경우 사용료 등의 감면(안 제10조제5항)
 - 구청장은 자치센터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음
 - ※ 「별표 2」로 규정
-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 안전관리 대책(안 제11조제5항)
 - 동장은 자치센터 내에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적절한 피해보상을 위해 시설보험 등에 가입 가능

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수의 하한선 폐지 및 고문제도의 신설(안 제17조제1항, 제18조제3항 및 제21조제4항)
 - 종전에는 위원수를 “15~25인 이내”로 하였으나 “25인 이내”로 하한선을 폐지하여 지역실정에 따른 자율적 구성이 가능토록 하였음
 -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조언 등을 위해 3명 이내에서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하되, 당해 동에서 선출된 시·구의원은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음
-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대표성 확보(안 제17조제2항, 제3항 및 제6항)
 - 주민자치위원을 동장이 직권으로 위촉하는 방식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적격자를 위촉하도록 변경
 - 위원 분포의 균형과 대표성 확보를 위해 어느 한 계층에서 1/3 이상이 위촉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위원 위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매년 초 위원 전원의 주요인적사항을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
 - 신규 위촉의 경우에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공개
- 위원 등의 임기단축으로 주민참여기회 확대(안 제17조제7항)
 - 위원장, 위원, 당연직이 아닌 고문 등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가급적 많은 주민들의 참여기회 보장
- 위원회의 자율적 역량 제고(안 제10조제2항, 제3항, 제6항 및 제7항, 제16조제1항 및 제3항, 제18조제4항)
 - 위원회는 심의·자문기관적 성격을 갖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의결·집행기능 부여
 - “수강료”의 징수범위·요율 등은 위원회가 의결로써 결정
 -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원회 명의로 수행
 - 위원회 회의 개최시 위원회 명의로 통보 등
- 위원회 위원의 자격 및 해촉요건 강화(안 제17조제2항, 제20조제1항)
 -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위촉토록 하여 역량 있는 인사의 참여기회를 확대
 - 해촉요건에 있어서도 “자치센터 운영취지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를 해태한 경우” 등을 추가
-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제고(안 제17조제1항 및 제7항)
 - 시·구의원의 경우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대표로서의 예우와 함께 위원회 운영의 일정한 범위 내에서 관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위원장의 연임은 계속 연임에서 1회에 한하여 인정함으로써 위원장 계속 연임에 따른 문제점 최소화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 행정자치부 『1·2단계 읍·면·동 기능 전환 보완지침』
- 나. 합의사항 : 합의되었음
-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주민복지센터”를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한”을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로 하고, “주민복지기능”을 “주민자치기능”으로 하며, “주민복지센터”는 “주민자치센터”로 하고, “주민복지센터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주민복지센터”를 “주민자치센터”로 하고, 동조제2호 중 “각종 직능·자생단체”는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로 한다.

제3조 중 “주민복지센터(이하“복지센터”라 한다)”와 “주민복지센터위원회”를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주민복지센터”를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복지센터”를 “자치센터”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자치센터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복지센터는”을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으로 하며, “주민복지기능”을 “주민자치기능”으로 하며, 제1호 중 “취미교실”을 “전시회”로 하고, 동호를 제2호로 하며, 제2호는 제5호로 하고, 제3호는 제4호로 하며, 제4호는 제6호로 하고, 제5호 중 “지역문제에 대한 토론, 건의 등”을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 활동 등”으로 하여 동호를 제1호로 하며, 제3호 및 제3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중 “복지센터”는 “자치센터”로 하고, 제2항 중 “시설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요구한 시설 등을 우선으로 하되”는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로 하며, “구청장”을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으로 하고, 제3항 중 “복지센터”를 “자치센터”로 하며, 제4항 중 “계획”은 “설치계획”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복지센터”를 “자치센터”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항 중 “복지센터”를 “자치센터”로 하고, “위탁할 수 있다”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하며, 제3항과 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⑤구청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의하여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구청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구별로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인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복지센터”를 “자치센터”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복지센터”를 “자치센터”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복지센터”를 “자치센터”로 하고, “동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을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으로 하며, 제2항은 제4항으로 하고, 제2항과 제3항 및 제5항 내지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③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구청장이 「별표1」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 내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⑤구청장은 제11조제3항에 의한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비율 등은 「별표2」로 정한다.

⑥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복지센터”를 “자치센터”로 하고, 제3항 중 “시설 등”을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으로 하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복지센터”를 “자치센터”로 하고, 제3항을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중 “1월 전까지 복지센터”를 “3월 전까지 주민자치”로 하고, 제2항 중 “복지센터”를 “제10조에 의한 사용료 등 자치센터”로 하며, “심의를 거쳐”를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주민복지센터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회”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동사무소의 복지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주민복지센터를 둔다”를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로 한다.

제16조를 제1항으로 하고, 제1호 중 “복지센터”를 “자치센터”로 하고, 제5호 중 “복지센터의 운영 등”을 “자치센터의 운영”으로 하며,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써 결정한다.

③위원회는 제21조에 의한 정기회의 개최시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 중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한다”를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동에서 선출된 시·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로 하며, 제2항 중 “덕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출된 후보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2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6항을 제7항으로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하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당해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통장 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

2.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 후보자

③동장은 제2항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위원의 1/3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

⑥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④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위원”을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으로 하고, “해촉할 수 있다”를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당연직 고문의 경우에는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로 하며, 동항제3호 중 “위원 스스로”를 “스스로”로 하고,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동호 중 “기타 위원으로서”를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하였거나”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항중 “위원의 임기”를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로 한다.

4.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2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제2항과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④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⑤동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2조 중 “간사 또는 지정된 공무원은”을 “간사는”으로 한다.

제23조 중 “위원”을 “고문을 포함한 위원”으로 한다.

별표1 및 별표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자치센터의 명칭이 제4조제2항에 규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별표1]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제10조제3항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 시설명 : 다목적회의실
- 사용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는 무료
 -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사용하는 경우 시간당 10,000원 이하
 - ※ 1시간 초과 시마다 50% 추가부담

2. 수강료

(단위 : 원)

구 분	수강시간(월)	수 강 료(월)	비 고
수 강 료	10시간 이하	13,000원 이하	실습재료비는 수익자 본인부담
	20시간 이하	25,000원 이하	
	20시간 이상	30,000원 이하	

※ 산출근거 : 월시간 × 시간당 강사(자원봉사)수당 / 20명(기준수강인원) = 1인당 수강료

[별표2]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제10조제5항 관련)

감 면 대 상	감면비율
국민기초생활기본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그 가족	전액 면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국가유공자에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자	
모자복지법에 의한 저소득의 모자 또는 부자 가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소년·소녀가장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

현 행	개 정 (안)
<p>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 칙</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복지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두는 주민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복지센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복지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2. “단체”란 관할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목적의 각종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p>제3조(원칙) 주민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 한다)와 주민복지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동사무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목적의 배제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주민복지센터</p> <p>제4조(설치 등) ① <u>복지센터</u>는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u>주민자치센터</u>.....</p> <p>.....</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 칙</p> <p>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자치기능 <u>주민자치센터</u> <u>주민자치위원회</u></p> <p>제2조(정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주민자치센터</u>” 2. <u>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u> <p>제3조(원칙) <u>주민자치센터</u>(이하 “<u>자치센터</u>”라 한다)와 <u>주민자치위원회</u>(이하 <u>현행과</u>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주민자치센터</p> <p>제4조(설치 등) ① <u>자치센터</u></p>

현행	개정 (안)
<p>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u>복지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u></p> <p>② <u>복지센터의 동사무소별 명칭은 당해 동사무소의 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정한다.</u></p> <p>제5조(기능) ① <u>복지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 및 주민복지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문화행사, <u>취미교실,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u> 2. <u>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u> (신설) 3.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 기능 4.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5. 지역문제에 대한 토론, 건의 등 주민자치 기능 <p>② 제1항의 기능 중 당해 동사무소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신설)</p> <p>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u>구청장은 복지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u></p> <p>② <u>시설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요구한 시설 등을 우선으로 하되, 동사무소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u></p> <p>③ <u>복지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 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 자치센터 ② <u>자치센터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주민자치센터”로 한다.</u></p> <p>제5조(기능) ① <u>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자치기능</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현행 제3호와 같음) 5. (현행 제2호와 같음) 6. (현행 제4호와 같음)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u></p> <p>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자치센터</p> <p>② <u>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u></p> <p>③ <u>자치센터</u></p>

현행	개정 (안)
<p>④ 구청장은 동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제7조(운영) ① <u>복지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복지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동장이 한다.</u></p> <p>② <u>동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복지센터의 운영을 하게 할 수 있다.</u></p> <p>(신설)</p> <p>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u>복지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u></p> <p>(신설)</p> <p>(신설)</p> <p>제8조(자원봉사자) ① 구청장과 동장은 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p> <p>② 자원봉사자는 복지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p>	<p>④ <u>설치계획</u></p> <p>제7조(운영) ① <u>자치센터</u> (이하 “<u>자치센터의 운영</u>”이라 한다)</p> <p>② 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 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u>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u></p> <p>③ 위원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자 중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p> <p>④ <u>자치센터</u>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자치센터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⑤ 구청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의하여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⑥ 구청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구별로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인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제8조(자원봉사자) ① <u>자치센터</u></p> <p>② <u>자치센터</u></p>

현행	개정 (안)
<p>제9조(강사) ①복지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p> <p>②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복지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p> <p>제10조(사용료 등) ①복지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동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p> <p>(신설)</p> <p>(신설)</p> <p>②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제11조(이용 등) ①주민은 복지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p>	<p>제9조(강사) ①자치센터 ……………</p> <p>……………</p> <p>②………… 자치센터 ……………</p> <p>……………</p> <p>제10조(사용료 등) ①자치센터 ……………</p> <p>……………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 ……………</p> <p>……………</p> <p>②제1항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p> <p>③사용료 등의 징수와 요율 등의 결정은 구청장이 「별표1」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 내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p> <p>④(현행 제2항과 같음)</p> <p>⑤구청장은 제11조제3항에 의한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표2」로 정한다.</p> <p>⑥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p> <p>⑦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p> <p>제11조(이용 등) ①………… 자치센터 ……………</p> <p>……………</p>

현행	개정 (안)
<p>②복지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p> <p>③주민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p> <p>④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p> <p>제12조(주민참여) ①구청장과 동장은 복지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p> <p>②관할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복지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p> <p>③참여의 요구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 또는 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복지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p> <p>제13조(수당) ①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②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14조(보고) ①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복지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동장은 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 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주민복지센터위원회</p>	<p>②자치센터</p> <p>③..... <u>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u></p> <p>④(현행과 같음)</p> <p>⑤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p> <p>제12조(주민참여) ①..... <u>자치센터</u></p> <p>②..... <u>자치센터</u></p> <p>③삭제</p> <p>제13조(수당) (현행과 같음)</p> <p>제14조(보고) ①..... <u>3월 전까지 자치센터</u></p> <p>②동장은 제10호에 의한 사용료 등 자치센터..... <u>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u></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주민자치위원회</p>

현행	개정 (안)
<p>제 15조(설치) <u>동사무소의 복지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주민복지센터위원회를 둔다.</u></p>	<p>제 15조(설치) <u>동사무소의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u></p>
<p>제 1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복지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2.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복지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p>(신 설)</p> <p>(신 설)</p>	<p>제 16조(기능) ①(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치센터 …………… 2. ~ 4. (현행과 같음) 5. …… <u>자치센터의 운영</u> …………… <p>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p> <p>③위원회는 제21조에 의한 정기회의 개최 시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의 기능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 17조(구성 등) ①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u>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한다.</u></p> <p>②동장은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u>덕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u></p> <p>(신 설)</p> <p>(신 설)</p> <p>③동장은 주민 각계 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등에서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p>	<p>제 17조(구성 등) ①……………</p> <p>…………… <u>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동에서 선출된 시·구의회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u></p> <p>②……………</p> <p>…………… <u>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출된 후보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해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 2.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 후보자 <p>③동장은 제2항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각계 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1/3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 (안)
<p>④위원회 고문 1인을 두되 관할구역 구의원은 당연직 고문이 된다.</p> <p>⑤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p> <p>(신설)</p> <p>⑥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신설)</p> <p>(신설)</p> <p>제19조(간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간사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p> <p>제20조(해촉) ①동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p>	<p>④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p> <p>⑤ (현행과 같음)</p> <p>⑥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p> <p>⑦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p> <p>④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p> <p>제19조(간사) (현행과 같음)</p> <p>제20조(해촉) ①.....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당연직 고문의 경우에는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p>

현행	개정 (안)
<p>1.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p> <p>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p> <p>3. <u>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u> (신설)</p> <p>4. <u>기타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u> ②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u>위원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u></p> <p>제21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신설)</p> <p>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p> <p>(신설)</p> <p>제22조(회의록) 위원회의 <u>간사 또는 지정된 공무원은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u></p> <p>제23조(실비보상 등) <u>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u></p> <p>제24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p>	<p>1.~2. (현행과 같음)</p> <p>3. <u>스스로</u></p> <p>4. <u>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u></p> <p>5. <u>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하였거나</u></p> <p>②..... <u>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u></p> <p>제21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p> <p>②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u>위원장 명의로 한다.</u></p> <p>③ (현행 제2항과 같음)</p> <p>④<u>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u></p> <p>⑤<u>동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u></p> <p>제22조(회의록) <u>간사는</u></p> <p>제23조(실비보상 등) <u>고문을 포함한 위원</u></p> <p>제24조(시행규칙 등) (현행과 같음)</p>